



세계 각국의 요구자본제도 현황 및 특징

이해량 연구원

요약

■ 세계 각국의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요구자본제도는 RBC 채택 국가, 위험중심의 경제적 요구자본제도 채택 국가, 그리고 위험중심의 경제적 요구자본제도로 이행 중인 국가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 각국의 요구자본 제도는 위험중심의 경제적 요구자본제도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요구자본제도는 최근 위험중심의 경제적 요구자본(이하 “경제적 요구자본”¹⁾)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요구자본제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각종 위험 발생 시 이에 상응하는 자기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2016년 유럽은 경제적 요구자본 개념을 도입한 Solvency II 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스위스를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 역시 동 제도를 염두에 두고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현재 국가별 요구자본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RBC제도 채택 국가, 경제적 요구자본제도 채택 국가, 경제적 요구자본제도로 이행 과정 중에 있는 국가로 구분될 수 있음.²⁾

- RBC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이 정해 놓은 일정 수준의 RBC 비율³⁾에 도달해야 하는 제도로 미국,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 등이 채택하고 있음.
- 경제적 요구자본제도는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평가 즉, 자산·부채평가 시 현재의 시장가치를 적용하는 제도로 스위스, 호주, 유럽 등 다수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음.
- 경제적 요구자본제도로 이행 과정에 있는 국가는 브라질,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임.

1) 경제적 요구자본은 경제적이고 시장과 일치된 접근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자본을 산출하는 것임.

2) Swiss Re(2015), “Insurance solvency regulation in Latin America: modernizing at varying speeds”.

3)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함.

- RBC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공식중심(formular based) 매커니즘으로 부채평가 시 원가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RBC제도 채택 국가들은 최근 RBC제도에 경제적 요구자본제도를 결합시키고자 함.
 - RBC제도는 과거 경험치에 대한 통계적·시나리오 분석과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정해진 리스크계수에 자산·부채평가금액 등의 위험노출 규모를 곱한 위험기준자기자본 산출공식을 적용함.
 - RBC제도는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나 부채는 원가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리스크의 과소평가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LAT(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⁴⁾를 동시에 시행하는 국가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가치기반의 부채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은 2008년에 수립한 재무건전성 개혁 작업(SMI: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에 따라 IAIS가 제시한 경제적 요구자본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 우리나라와 일본도 2012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경제적 요구자본제도는 모형중심(model based) 매커니즘으로 부채의 시가평가가 가장 큰 특징임.
 - 경제적 요구자본제도는 RBC제도와 달리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하여 시가평가 접근 방식을 적용함.
 - 경제적 요구자본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유럽의 Solvency II 임.
 - 동 제도는 요구자본 산출 시 각 회사의 고유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표준모형, 감독기관 승인하에 회사 고유사정을 감안하는 완전내부모형·부분내부모형 등을 이용하는 모형중심의 매커니즘임.

- 경제적 요구자본제도로 이행 과정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RBC제도와 유럽 Solvency II 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임.
 - 멕시코는 2015년, 칠레와 브라질은 2016년에 경제적 요구자본제도를 도입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7년 초에 Solvency II 와 유사한 경제적 요구자본제도를 도입할 예정임.⁵⁾

kiri

4) LAT(Liability Adequacy Test)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유출·유입액을 현재가치화하여 보험계약 판매 당시 기초가정으로 적립한 장부상 책임준비금이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임.

5) Swiss Re(2015. 11), "Global insurance review 2015 and outlook 2016/17", *Sigma*.